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4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민홍철·강준현·오세희

정진욱 • 양부남 • 김정호

민형배 • 김 현 • 허종식

박지원 · 김태선 · 전재수

허성무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물류거점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중임. 그런데 물류・제조・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현행 제도가 물류산업 성장을 촉진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상하이·두바이 등 주요 해외물류거점은 제조·R&D 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중이며 스마트 IT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기술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물류를 포함한 제조·연구·회의·숙박 등의 시설을 집적화하고 스마트 IT 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국가적 차원의 스마

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5년마다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 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국제 물류진흥지역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 제15조 및 제18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각종 부담금·사용료·점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30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지 조성 및 기업·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4조 및 제35조).
- 사.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사업 등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6조 및 제37조).
-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8조).
- 자.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제물류진흥위원회를 두며,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국제물류진흥청을 설립함(안 제42조 및 제43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고부 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 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물류진흥지역"이란 국제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 류진흥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 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및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 제6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 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 로 하는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이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청취
 - 2.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의견 청취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4. 제42조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이하 "국제물류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2.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 3.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작

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 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국제물류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1.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2. 공항・항만・철도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진

- 화 · 국제화에 유리한 물류 거점 지역일 것
- 3. 지방균형발전 및 초광역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을 말한다) 경제활성화를 촉진 하는 지역일 것
- 4. 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효과가 가능한 지역일 것
- 5. 국제물류진흥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7.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제10조(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 ①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과 위치 및 면적
 - 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
 -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 5. 재원(財源) 조달방법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7. 교통처리계획

- 8. 기업유치계획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 9. 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시설 설치계획
- 10. 환경보전계획
- 1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세부목록
- 13.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 14.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1조(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 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효과)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변경
 -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 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또는 승인(국제물류진흥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해당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변경
- 9.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10.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
- 1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12.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13.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 14. 「항만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ㆍ변경
- 1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 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 ②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구역 또는 지역을 지정할수 있다.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

구역

-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 제13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지연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국제물 류진흥지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 2. 기업 유치 부진 등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국제물류진 흥지역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8 조를 준용한다.
-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 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3장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청(「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기업 및 투자 유치능력
-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실적
-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

사업시행자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국제물류진 흥지역개발계획 및 제18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 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 행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에게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일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주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 2.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 진흥지역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 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2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 허용을 위한 관할 부대장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1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1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 1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 가
-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결정
-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2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2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

- 2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전협의
-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에 관한 허가
- 2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 2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 2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 31.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32.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 33.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제10 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3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 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37.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 3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39.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의 협의
- 4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4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 4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4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

- 4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46.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47.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4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 4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5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5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②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21조(개발사업의 착수)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 제2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국제물류진 흥지역 관련 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본다.
- 제23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②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에 수용할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25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9조에 따라 고시된 실 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제물류진 흥지역의 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개발이익의 추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

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국제물류진흥지역(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 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30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 흥지역을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

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국제물류 진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의 건 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시·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32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33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 등

- 제34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홍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하"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물류시설·제 조시설·편의시설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 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요건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지역 개발 활성화, 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

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35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 흥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및 제조·연구·숙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종, 품목, 기타 허가 필요 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7조(임시허가)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개발 또는 운영하거나,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물류사업 및 물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

- 다. 이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임시허가 기간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원활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지 역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플랫폼의 설치·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①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설치·운영자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정보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물류산업 또는 물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물류산업 또는 물류 관련 산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또는 자본출자(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또는 출자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

- ·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 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1조(전시시설 건립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 자를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주관기관이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 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전시산업발전법」 제11조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장 국제물류진흥위원회 등

- 제42조(국제물류진흥위원회)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제물류진흥위원회를 둔다.
 - 1.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4.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5.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 7. 국제물류진흥지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한다.
- ⑥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국제물류진흥청의 설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

- 을 관리·운영하고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청을 설립한다. 이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청(이하 "국제물류진흥청"이라 한다) 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 ③ 국제물류진흥청의 장(이하 "국제물류진흥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는 국제물류진흥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국제물류진흥청의 조직·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국제물류진흥청의 업무) 국제물류진흥청은 해당 국제물류진흥지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 2.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융
 - 복합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5.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6. 물류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첨단 물류시설·장비 등의 보급·촉진 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6장 보칙

-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물류진흥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 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청문)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

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7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국제물류진흥청장 및 국제물류진흥지역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청장 및 국제물류특구 조성과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3.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